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0148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아람

**변론 종결**2023. 6. 2.

**판결 선고**2023. 8. 25.

## 주 문

1. 피고 및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0,1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1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대여금채권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6. 10. 17. C에게 2,250만 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연 2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6. 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8.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C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0차전5430), 위 법원은 2020. 5. 13. 'C은 원고에게 26,954,418원 및 그 중 20,621,240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20. 7. 8. 확정되었다(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2022. 1. 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35,968,561원이다.

2) 신용카드대금채권 가) C은 2016. 3. 10. 주식회사 E과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E은 2019. 5. 16. 원고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6. 20.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C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45200호), 위 법원은 2020. 5. 19. 'C은 원고에게 3,510,280원 및 그 중 2,867,147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하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2022. 1. 5.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4,215,163원이다.

#### 나. 피고 및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F은 2015. 5.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2. 16. '채권최고액 93,6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7. 19.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위 3건의 근저당권을 이하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3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C은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5. 2017. 9. 5.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었던 2017. 8. 7. 무렵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적극재산                      |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건물 J호                                                      | 70,000,0001) C이 2017. 10. 27.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건물 J호를 R에게 매도한 대금 |
|---------------------------|--------------------------------------------------------------------------|---------------------------------------------------------------|
| 구미시 K 대 320㎡ 중 132/463 지분 | 72,000,0002) C이 2016. 6. 20. 구미시 K 대 320㎡ 중 132/463 지분을 주식회사 S로부터 매수한 대금 |                                                               |
| 합계액                       | 142,000,000                                                              |                                                               |
| 소극재산                      | L캐피탈에 대한 채무                                                              | 20,990,000                                                    |
| M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 20,026,000                                                               |                                                               |
| N캐피탈에 대한 채무               | 17,509,000                                                               |                                                               |
| O캐피탈에 대한 채무               | 56,000,000                                                               |                                                               |
| E에 대한 채무(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 3,139,000                                                                |                                                               |
| D에 대한 채무(이 사건 대여금채권)      | 20,621,240                                                               |                                                               |
| 주식회사 P에 대한                | 120,000,000                                                              |                                                               |

|              |                     |                                                               |
|--------------|---------------------|---------------------------------------------------------------|
| 적극재산         |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건물 J호 | 70,000,0001) C이 2017. 10. 27.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건물 J호를 R에게 매도한 대금 |
| 채무           |                     |                                                               |
| 울산세무서에 대한 채무 | 4,665,010           |                                                               |
| 합계액          | 262,950,250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7. 8. 7.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306,979,100원을 증여받았거나 망인에게 반환한 134,911,84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72,067,276원을 증여받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C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C의 E 계좌로 2011. 9. 22.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이체함으로써 C에게 합계액 3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 C은 망인의 계좌로 2011. 10. 18. 9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까지 수심 회에 걸쳐 돈을 이체함으로써 망인에게 합계액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는 점, ② C와 망인 사이의 돈의 입, 출금이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거나 C이 망인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C에게 306,979,100원 또는 172,067,276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는 후인 2017. 9. 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항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법정상속분은 1/2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또한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 다음 날인 2017. 8.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6,944,4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81,527,773원 $[(210,000,000\text{원} - 46,944,453\text{원}) \times 1/2, \text{원 미만 버림}]$ 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2022. 1. 5. 기준 원리금의 합계액은 40,183,724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둘 중 적은 금액인 40,183,724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40,1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0,1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헌자**

별지

- 1) C이 2017. 10. 27.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건물 J호를 R에게 매도한 대금
- 2) C이 2016. 6. 20. 구미시 K 대 320m<sup>2</sup> 중 132/463 지분을 주식회사 S로부터 매수한 대금